

의정정보

12

2017-12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등 2건

■ 타 · 시 도 의회 주요동향

— 대구광역시의회 대구를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3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5)
- ▶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7)
- ▶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1)
- ▶ 경상남도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14)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18)
- ▶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21)
- ▶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23)
- ▶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6)
- ▶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31)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34)
-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53)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대구광역시의회 대구를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62)
-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 발의 (64)
-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아동 이동권 대책 마련 촉구 (65)
- ▶ 경기도의회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66)

최근 제·개정 법령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9)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71)
- ▶ 국회미래연구원법 (72)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75)
-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8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1.] [인천광역시조례 제5722호, 2016.11.14., 일부개정]

□ 주요목적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및 교육문화경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운용자를 둔다.

1. 도시기반계정: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환경녹지계정: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교육문화경제계정: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계정별 관리·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계정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 ①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주차장·도로·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조성 및 군·구의 공원·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육시설 확충·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정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7.12.1.] [전라북도조례 제4487호, 2017.12.1., 제정]

□ 주요목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시·군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빛공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7.] [경상남도조례 제4384호, 2017.12.7., 제정]

□ 주요목적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등의 환자에게 고압산소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고압 산소치료장비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압산소치료장비”란 잠수병과 가스중독 등으로 건강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 증상을 고압산소 방법으로 치료(이하 “고압산소치료”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압산소치료장비의 구입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2. 고압산소치료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진료·치료를 위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고압산소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경상남도에서 고압산소치료를 하거나 하려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압산소치료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의료기관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압산소치료를 거부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7.] [경상남도조례 제4385호, 2017.12.7., 제정]

□ 주요목적

경상남도 내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건강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노화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항노화산업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사업
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서부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항노화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15호, 2017.12.11., 제정]

□ 주요목적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물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택배비”란 고품질 쌀이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정책보좌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업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산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104호, 2017.12.11., 제정]

□ 주요목적

도심지역의 관광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이하 “스토리하우스”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14-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스토리하우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스토리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광석 관련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스토리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람시간) 스토리하우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
-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토리하우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

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시설의 일부를 관리·운영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12.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40호, 2017.12.11., 제정]

□ 주요목적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용인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투자산업국장, 처인구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용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 나.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 - 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시행 2017.12.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596호, 2017.12.7., 제정]

□ 주요목적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와 간호사 마가렛 피사렛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 뜻을 널리 알리고 봉사정신을 교육·실천하기 위해,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봉사학교의 명칭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이하 “봉사학교”라 한다)라 하며,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33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봉사활동”이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의 정신을 모든 계층에 알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소통의 정신을 함양하며,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신단련, 자질배양,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의 배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오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봉사학교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봉사학교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군과 법인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 조례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비) 봉사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배분)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2.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3. 봉사학교의 홍보
4. 봉사학교 주변 경관보호 및 관리
5.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6. 군 관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안내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봉사학교 입교자의 교육 업무
2.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계승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3. 봉사학교 내의 각종시설 유지관리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시설 사용료 징수
6. 그밖에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취소 및 정지) 군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군과 법인이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른다.

1. 봉사학교를 당초 목적 이외로 운영하였을 때
2. 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8조(이용료)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봉사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군수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군과 법인에서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봉사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허가를 받는 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1조(시설개방 제한) 군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봉사학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2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봉사학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 행위
 3. 미성년자 남녀혼숙 행위
 4.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운영) ① 군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법인과 공동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법인과 공동운영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운영내용, 기간, 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재정 부담 의무, 운영 인력 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명시하여 체결한다.
- ③ 시설의 이용료는 제8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이용료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은 고충군과 협의하여 수련 또는 교육 목적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요될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④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상 개방하여야 하고, 운영형편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 할 수 없으며, 법인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5조(공동운영 계약 구비서류) ① 법인은 공동운영 계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사본 1부
5. 봉사학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봉사학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6조(공동운영 기간) 공동운영 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한다.

제17조(관리감독) 군수는 봉사학교의 선량한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44호, 2017.12.11., 제정]

□ 주요목적

목포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①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는 사업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역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 육성
4.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8.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시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는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공모 및 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국장·안전도시건설국장·도시발전사업 단장과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3명
3.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5명 이내
-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목포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0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지역리더 발굴 및 양성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 등 개최 및 홍보

활동 지원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7.12.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531호, 2017.12.1., 제정]

□ 주요목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세계화를 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견”이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말한다.
2. “택견단체”란 충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택견을 전승·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택견지도자”라 함은 택견단체에서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로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증명되는 자로 이 조례에 의하여 택견지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택견수련장”이란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택견을 보급하는 택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견단체의 지원) 시장은 택견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택견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문화재청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운영
2. 세계택견연맹 사무국 설치 및 운영
3. 택견관련 홍보·축제·행사·연구·교육·보급사업
4. 택견세계화를 위한 택견지도자 파견 및 해외보급사업
5. 그 밖에 택견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 · 시장은 택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택견지도자로 지정한다.

1. 택견수련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택견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택전단체로부터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로 3년이상 택전을 지도한 자
3. 시립택전단원 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 택전지도자는 충주시의 시연 및 공개발표 요청시 적극 협력한다· 택전지도자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택전지도자의 심사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문화재분과에서 한다

제5조(택전지도자에 대한 지원) 택전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개인수련장 운영시 현판 수여.
2. 개인 택전수련장 운영 시 장려금 지원.
3. 공공시설의 사용과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택전세계화를 위한 해외지도자 파견.

제6조(택전지도자의 해제) 택전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택전의 시연이 불가능한 경우
2. 택전 수련 및 보급을 중단하거나 충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단, 해외파견 택전지도자의 경우는 예외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택전지도자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17. 11. 1.(수), 15:00~17:30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3층 대강당)>



총 평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와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

-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고미영(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 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

-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나, 연결, 속도, 이런 단어가 키워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 함. 어제 나온 기사 중에서는 이미 사교육을 하는 기관들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코딩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티끌 같은 조각에 매달려서 그것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 오늘 이 논의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82.6%가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이란 반응을 했다고 함.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에 귀결이 되고 교육의 많은 영역 속에서도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됨.
- OECD에서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소년 실업률이 평균 6년 연속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4년 연속 증가했고, 상승폭은 전체 실업률보다 가파르다.’ 는 자료가 있었음. 궁극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 첫째는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두 번째는 학력의 미스매치임.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이라서 일이년에 극복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임

- 청년실업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신조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그 중에 '문송과 '인구론', '대 2병'이 있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SBS 스페셜, 대 2병, 학교를 묻다.' 2017. 4. 2. 방송된 내용을 보면 '문송'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고 '인구론'은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 라는 말이고, '대 2병'은 '대학교 2학년이 돼서 굉장히 진로에 갈등을 느끼는 것' 을 지칭하는 용어임.
- 2015년 한해 자퇴한 학생이 3만 8,523명, 전과생이 1만 2,179명, 휴학이 46만 7,570명, 물론 군대에 가거나 졸업을 유보하는 학생을 모두 더한 수치이긴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임.
- 이제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라는 측면에서 오늘 고민을 했으면 좋겠음.
-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 했음. 이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작년에 제2차 진로기본교육을 구상해서 발표했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진로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 임.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

- 첫째,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속에 광범위하게 녹아 들어 가야 됨. 진로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정 교사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전담하는 방법이 있고, 교과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일부 과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교사들이 진로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고

- 둘째, 진로교육법 제9조에 보면 '진로전담교사를 초·중등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등학교에는 이미 배치가 완료되었음. 아직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안되었는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진로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연수를 시키고 있어 충남도 2/3가 끝났음.
- 진로전담교사의 내용이 초등과 중등은 다름. 초등은 60시간 연수시켜 배치를 시키는데, 중등은 교과를 완전 전과를 해서 570시간을 받아 배치를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60시간 연수해서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초기교육이 중요한데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일단은 배치라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2) 진로체험의 활성화

- 자유학제와 진로교육을 하면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은 같다' 라고 대국민 홍보가 되어있는 부분이 많음. 진로교육에 있어서 진로체험은 아주 조그만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진로체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기관에서부터 먼저 샘플을 열어서 개방함으로써 인해 민관과 기업과 대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확보해 뒀음.

(3)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 이 부분은 충청남도나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15개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음. 국가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성이 되었고, 충남에는 연구정보원에 진로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음.

○ 개인맞춤형 진로교육의 학교 현실

-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학부모임.

아이들 생각은 언론과 학교에서 동료들의 의식이 비슷해서 많이 앞서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선택한 진로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 학부모는 당신들이 살아온 시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맞춤형 개인 진로교육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100%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천안이나 아산처럼 학교 규모가 학년당 14~15 학급,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곳에서 한명의 진로진학 담당교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 여건으로,

- 첫째,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을 교육과정이라 하는데, 그 교육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수가 확보되었나 하는 부분
- 둘째, 개인차를 고려한 진로교육이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 셋째, 충분한 지원인력과 전문성이 확보 되는가 하는 부분
- 넷째, 학생들의 능동적 요구가 있는가. 이 부분은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음. 아이들은 끈임 없이 부모님과 선생님, 지역 또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학부모임. 학부모님의 가치 판단에 따라 아이들이 길들여져 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 별로 못 느끼고 '엄마가 선택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 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음.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따라 올 것인지, 눈앞에 대학 입시가 있는데 소질에 맞는 걸 따라 가다가 부모님과 가족 모두 추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음.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많이 개선 되서 오히려 일치할 수 있다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음.

○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대안

- 첫째, 학교별 교육과정의 재정비, 2015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진로교육을 개별화가 충분히 가능
- 둘째, 학생 요구를 먼저 파악해야 함. 요구가 먼저인데 알아야 나옴. 학생 요구를 파악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한 다음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셋째, 획일화된 부분보다는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접근
- 넷째,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면서 그것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에서는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90%이상의 중학교들이 선택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진행하면 바람직함.
- 다섯째,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진로 전담교사와 일반 담임 교사까지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여섯째, 대학을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직장에 갔을 때 누가 더 대우를 받는지 설문조사를 하면 고3 아이들 90%이상이 대학을 나와야 유리하다고 생각함. 이는 막연한 것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음. 이런 생각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줘야함.
- 마지막으로, 학교가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시기는 지났음. 다시 말하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이 학교와 한손을 잡고 갔을 때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서로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함.

② 지정토론

① 구성완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

- 주제가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진로교육 의정토론회'인데 4차 산업이 핵심이나

맞춤형 진로교육이 핵심이나, 맞춤형이라 했을 때 4차 산업에 대한 맞춤형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맞춤형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들에게 꿈을 물으면 100명중 95명은 직업을 이야기 함. 직업을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이 포인트라고 생각함. 자기한테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꿈이, 진로 희망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학생들은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 각종 활동, 동아리, 대회 등에 나갈 것임.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직업을 정해 놓고 한 길만 보고 왔는데 그 길이 너무 좁은 길이라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그 아이의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봄. 관심사로부터 확대 해 가야 함. 꿈을 물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족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른들이 안내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앞에서 모든 교사가 진로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것임. 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이들과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해 봐야 함. 진로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임.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건데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당연히 나를 찾아가는 놀이터고 만나는 모든 주변사람이 나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임.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함. 학생이 교실, 집, 학원에서 하고 있는 공부가 쓸모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공부가 아닌 또 다른 공부를 시켜주자는 것인데, 아이들은 성적위주로 가고 있음. 대학 위주로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하겠다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대 2병 같은 상황이 발생함.

-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진로교육센터가 진로 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도에 반드시 두게 되어 있음. 시군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고, 아산교육청은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음. 아산시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는 전국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임. 타시군은 그렇게 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길 바람. 오늘 이 자리가 의정토론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학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은 누구 한사람의 몫이 아닌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함.

② 나미애(온양여자고등학교 학부모)

- 공립 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음. 아이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있음. 우리 아이도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음.
-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임. 아이들이 바뀐 선생님한테 바뀐 교육을 받아야 함. 요즘 선생님들 너무 좋게 바뀌었음. 6등급 밖에 안 나오는 아이에게 '좋아 하는게 너무 명확하다.' '인성 바르고 교우 관계가 좋고, 체육을 좋아하고,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없으시겠어요'라고 많은 칭찬을 해 주었음.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더 좋았음. 공부 잘하는 큰아이 담임한테 듣는 이야기 보다 못하는 아이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해 주셨을 때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 엄마의 역할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파고 들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필요 없는 과목의 수업이 너무 많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더 많이 치중해도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고민되는 관점에 자신의 목표에 상관없는 과목, 그렇다고 시수를 짜다 보면 인성 교육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니깐 사실 뺄 과목은 없겠지만, 전체 교육시수로 보면 진로에 대해 제대로 설계하자면 너무 필요 없는 과목을 많이 수업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독일의 경우 60%이상이 사교육이 없음. 우리 아이들처럼 유치원 때 한글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없음. 독일에서는 공립학교의 교육만 받고도 그 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음. 학부모로서 그런 교육을 바라는 것임.

- 많은 선생님들이 사교육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함. 사교육도 영어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진로를 맞출 수 있는 사교육이 필요함.

- 선생님들의 퀄리티를 높이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과 똑같음. 교육을 바꿔 주시고 바뀐 교육의 틀 안에 유초·중고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진로에 포인트를 맞추어 교육해 주길 바람.

- 좁전에 710만개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곧 5차 산업이 공격해 올 것임. 우리가 710만개 없어질 직업에 대해 앞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음.

③ 서혁준(온양고등학교 학생)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취업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은 입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시의 주목적은 대학이며, 대학은 진로를 선택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실현시켜야 할 단계인데 아이러니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진로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세상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에 대한 취업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 주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함.

- 지능정보기술의 혁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고등학생 입장에서 진로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가장 큰 이유는 진로라는 교과목이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임. 진로에 신경 쓸 시간을 내신 공부에 할애해서 오직 내신 등급을 올리거나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더 신경 쓰는 학생이 많아지며,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알게 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음. 진로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 첫째, 진로교육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로교육은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일방적 정보 전달적 수업 임. 물론 다른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고 학생은 대체적으로 정보 전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많은 학교가 이러한 형태의 수업 방식으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 어려움.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수업의 성과, 학생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움.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그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획일화된 수업방식에서 개별화를 추구하기는 어려움. 교육방식 변화 방안으로 수업에 소통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음.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수업방식에서 단지 소통을 도입하는 것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은 학생 한명 한명과 소통하며 개인에게 맞춤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음.

- 둘째, 개인화된 진로교육을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진로교육 조사현황 기초 통계자료를 보면 진로수업 및 진로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90%가 넘고, 진로 상담을 한 학생은 60% 남짓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상담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1:1 방식의 상담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해 주면서 학생이 집중하게 만들고, 질문과 응답을 통해 학생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가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상담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학생 개인에게 진로교육을 맞추기 위해 개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상담을 통해 거론할 수 있음.

- 셋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된 진로교육을 고등학교에도 확대해야 함

- 현재 진로인식단계인 초등학교, 진로 탐색단계인 중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고등학교에 비해 비중이 많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임.

-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진로 교육임. 진로 미결정으로 인한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음. 더구나 현 고등학생은 중학교때 자유학기제를 겪지 못한 상태여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적절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 않아 진로설계를 해야 할 단계인 고등학교 시대에 맞지 않은 진로를 탐색하는 경우도 생김

- 넷째, 학교의 모든 교사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진로

교사와 다른 교육과목 교사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진로교과 시간에만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고 진로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진로담당교사가 모든 학생들에 대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른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모든 교사 양성과정이나 연수과정 등에 진로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교육부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음. 현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함. 또한 획일화된 진로교육 속에서는 이러한 진로 설계가 힘들 것임.

진로교육의 형태를 바꾸고, 개인 상담의 비중을 높이고,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더 확대하고, 학교 내 모든 교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장려하는데 여력을 다한다면 충남교육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⑤ 장기승(교육위원회 위원장)

-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은 진학이나 취업 지도라는 과거의 부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는 삶의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과 내실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실 또는 학교 중심의 풍토에서 학교 내외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과 공감은 향후 성공적인 진로교육의 정착에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충남교육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과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 12개 직속기관장,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귀하신 말씀들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과 잘 논의 해서 귀한 말씀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그 혼이 교육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청중토론

- ①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파장을 정확히 가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 하고 분배해 내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실체와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일단 개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 주는 교육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함.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직업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직업 중심 보다는 열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즉, 학생이 어떤 영역으로 나가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 4차 산업혁명시대는 바로 인간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에 맞는 인간의 욕구를 만들어 내는 산업과 기술 자, 그런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교육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질의: 아산 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규 원장]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에서 직원을 뽑으면 엔지니어를 많이 뽑는데,

애플시는 인문학자, 사회학자를 많이 뽑는다고 함. 철학자, 문화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융합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고 있음. 인문학과 관련된 교육을 바탕에 깔아야 된다는 말씀. [답변: 좌장 서우석 교수]

- ② 우리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함. 더 나아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하듯이 진로상담, 진로교육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A라는 길로 가다가 B라는 길로 갈수 있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의 소통,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학부모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 아이들의 진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입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음.

아이의 진로 문제를 보면 학교, 학교, 학부모 다 문제점이 있음. 내 아이만 진로탐색이 끝나고 대학졸업만 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진로, 입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수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함. 진로와 입시에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지속적으 전수 해 줄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람. 최근 핀란드 교육을 많이 얘기 함. 핀란드는 의과 대학을 나오거나 4년제 공대를 나온 사람 보다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음.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기초교육으로 갈 것인지 진학교육을 할 것인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질의: 자유한국당 이견영]

⇒ 내년도 진로진학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답변: 고미영 장학관]

- ③ 4차 산업혁명 개념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음.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인식 전환이 가장 큰 문제임.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확신함.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맞춤형 될 수 없음. 좋은 학교 가야한다는 부모의 인식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이 입시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안 가르칠 수 없음.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가야만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음.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있음.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기 지장 없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으면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한다는 사회적 인식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 밖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함. [질의 이상욱 퇴직공무원]

- ⇒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함.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인식전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영국에서는 1~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봄. 학교 공부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찾는 활동을 함.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이제 팔요하지 않음.

오프라인 대학은 10년 이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MOOC라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또는 '개방형 온라인 강좌'로 서비스 하는 대학이 많아짐. 세계 유명한 대학 강의를 올려놓고 무료로 들을 수 있음. 코세라(Coursera - 2012년 개설한 세계 최대의 MOOC 플랫폼으로 2014년 기준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 개설 과목 450여 개, 수강생 500만 명이 참여) 학위를 주기 시작했음. 구글 등 유명한 국제회사에서는 코세라에서 제공한 몇 개의 코스를 이수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뽑고 있음.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 것인지에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답변 죄장 서우석 교수]

- ④ 선생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 많이 바뀌고 있음. 그런데 선생님들만의 노력으로는 안됨.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의 약 93%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가치,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다 같이 지역 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선생님이므로 선생님이 현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 먼저 말씀 드림

모든 직업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즉 핵심역량은 중고등학교 과정에 최소한 이수해야 된다고 편제되어 있음. 고미영 장학관님이 계신데,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음.

[질의 온양여중 노재거 교장]

- ⇒ 현재 선진국인 핀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쪽에서는 이미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도 가지 않고 직업을 갖으려고 하는 학생이 많음. 사회 전반적으로 상급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얻을 때와 중고등학교를 나와 직장을 얻을 때 삶에 주어지는 사회적 조건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가겠다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는 것 같음.

우리나라는 내가 이 직업을 갖을 것이니 이것만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큼.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업 갖고 그 다음에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직업을 몇 가지를 갖게 될지 아무도 모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겁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보이지 많은 과정을 스스로 단련해 가며,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을 스스로 이겨 내는데, 이를 통해 얻은 진로 개발 역량이라고 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내가 스스로를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도알고 있음. 직업을 갖기 위해 초중고 시절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함.

[답변 : 고미영 장학관]

- 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렸을 때 맨날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 부모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으나, 컴퓨터를 배운 후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자가 됐음. 이런 예를 말씀드리고 싶음.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장난감만 가지고 생활하다가 성공한 경우를 보았음.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고 있음.

[질의 : 아산시민]

⇒ 좋아하는 것을 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

[답변 : 서우석 교수]

- ⑥ 금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물리학, 생물학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이 특징이며 인간의 실생활과 업무 방식,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바뀌놓을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하였음. 1인 다기능의 시대가 돌아왔고, 이를 위해 교육의 기능이 중요함.

- 첫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함. 단순히 견학을 가는게 아니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4차 산업관' 같은 걸 만들어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음.
- 선생님 개발을 위해 반학기 수업제 도입이 필요
- 국가정책으로 4년제 대학을 현재의 60프로 줄이고 전문학교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함.

[질의 : 과학기술인 김영택 교수]

⇒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감.

강원도에서는 진로교육원을 만들어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충남은 연구정보원에서 연구사 1~2명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이 강원도 보다 예산도 많은데 강원도와 비교됨.

강원도에서는 교육지원청보다 더 큰 규모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짓고,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진로교육을 시키고, 교사와 타시도 학생 교육을 하고 있음. 충남에서도 '진로교육원' 신설해야 한다고 봄. 진로교육법에도 나와 있음.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옛날부터 있던 형식적인 조직이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음.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지었으면 좋겠음. 선생님 반학기 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함.

[답변 서우석 교수]

⇒ 충남의 진로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본청에 진로 진학 팀도 있지만 3년전 충남교육 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부가 동시에 개설되었음. 본청에서 기획하고 연구정보원에서 실행해서 사실상 초등까지 타시도를 앞서가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사적 기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로교육을 해나가야 함. 가장 잘하는 곳이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음. 다른 기관을 세우는 것 보다 15개 지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 센터'에 진로 교육을 '각각 지역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강남구청이나 오산시청처럼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아이들의 진로교육은 지자체와 지원청이 함께 이끌어 가는 시스템을 가려고 함.

[답변 고미영 장학관]

결과 및 성과

<도출 과제>

1. 진로직업체험 전담 기관 설치 및 인력 확보
2. 각급학교 진로교육 확대 및 전문상담 인력 부족 해소
3. 진로직업체험 협력체제 강화(학교·교육지원청 - 지자체 - 진로체험기관 등)
4. 진로와 입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5.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 전환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의견 수렴
-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 제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 '17. 11. 22.(수), 14:00~17:00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 >



총 평

이번 토론회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법 및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청소년기는 사회적응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노동권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및 규제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청소년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충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교육내용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해 10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5명과 특성화고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노동현장 실태와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사항 등을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직업실습을 하기위한 교육적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률로 계상된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 제고 때문에 점점을 게을리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학생들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실습이 전 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
- 공학계열의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실습이 30%에 달했지만, 상업계열은 10%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음식점,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기업체는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취업률을 잣대로 특성화고의 사업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기준을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를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함.
- 또한 현장실습을 나갈 때에는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현장실습의 근거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의 경우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도청·센터전문가·학교선생님·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산업체를 조사 및 점검하고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그 외에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외에도 현장실습 개선사항으로 교육부는 현재 취업률을 반영하여 교육청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부당 위법행위를 당하여도 학생에게 참을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평가기준인 취업률의 적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향후 더 필요하며 현재는 교과목이 아닌 특강형식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추후 정규교육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② 사례발표

①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들을 통해서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몇몇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알바신고센터'의 존재도 잘 모르는 상황임.
-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결과로 보자면, 사업계획의 효과 및 적정성으로서, 원스톱 현장밀착형 체계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으며, 센터를 통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소년과 인권강사들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증진과 사회적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이라는 초단기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짧은 기간이지만 도내 학생들과 관련 단체들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장기적 관점으로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②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이 노동을 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그냥 참고 일한다는 대답이 74.8%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돈을 벌어 어디에 소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취미활동이나 대인 관계에 주로 소비할 것이라는 응답을 깨고 부모님께 드리거나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71%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 노동이 용돈벌이를 넘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노동인권의 문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며, 광주시의 경우 민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협조와 사업집행력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와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확대를 위해 구별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사업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고민과 노력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됨.

③ 지정토론 ① 원찬식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 천안, 논산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생계형알바(특성화고)가 없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도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음.
- 현재 각 학교의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취업률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측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인내하기를 권유하는 상황임.
-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교사와 인권전문가의 역할을 분담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인권전문가는 법률, 피침해학생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선생님들께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을 받는 일도 어렵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노동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에도 전문적인 노동인권 영역의 기관이 활용되고 운영되어야 함.

② 최우주 (천안공업고등학교 학생)

-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인데 현재는 폐원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하고 있음.
- 또한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인권 외에도 학생들간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현실적 고민을 들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센터를 지속시켰으면 좋겠음.

③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前 대표)

-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매우 절실함.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 등의 학문적 영역의 교과에 집중되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기술부분의 교과에만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리인 노동에 관한 교육은 전무함. 따라서 노동인권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 노동에 대한 개념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론교육과 교섭 등의 체험활동까지 다양하게 좀 더 많은 시수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같이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로써 안심이 되었는데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센터운영을 직영으로 하게 된 도의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움.
- 교육의 효율성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까에 둔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전문기관 민간위탁은 현재 꼭 필요하다고 봄.

④ 김 용 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청소년은 학교의 허락·동의없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접수·상담·구제 등의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인권을 침해당한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온전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에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를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함.
- 앞으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과 학생과 청소년, 교사와 학부모, 알바노동자와 사업주, 학교와 학교 밖을 포괄하여 교육과 상담, 권리찾기 지지지원, 정책제안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종합적 기구로서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위상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수적 확보가 필요함.

⑤ 안수영 (충남여성정책연구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은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권리 주체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일터에서 지켜지고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며 노동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무임.
- 청소년의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는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 및 자원을 활용하여 협치·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때 학교 안·밖을 아우르는 접촉면 확대, 문턱 낮은 노동권익서비스 제공, 청소년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이해 조정, 권리구제, 상담 및 법률대리 등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 지원이라는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민관 협치를 통한 통합적 전담기구 운영이 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임.

4 청중토론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교과목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준폐의 기로에 있음. 이에 대해 앞으로 센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바람.

[충청남도내 교사]

-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따라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과 권리구제를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길 바람

[천안여성의 전화 대표]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현재 올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예산 및 운영인력의 공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이 있는지?

[전교노충남지부장 김종선]

- ⇒ 도의회는 현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며, 도의회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답변 충청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교육청과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27일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음.

[답변 충청남도 노동정책팀 조의상 팀장]

- 당 센터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을 맡고 있어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반면,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정리발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자발적 관심 유도과 정규교육편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도내 기업인,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도내 기업인,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
-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과 통합적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대구를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 민간시설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해야
-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 구축을 제안

배지숙의원은 사전에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대구는 지질특성상 대형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라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지진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지숙의원은 지난 11월 포항지진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작정 아파트에서 대기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지진대표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하지 못했고 대피소를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다면서 지진시 행동요령의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깝고 안전한 대피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내진현황은 2016년 말 기준 29.7%에 불과하다면서 지진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안전차원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통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필로티구조의 빌라에 대한 성능평가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지숙의원은 지진은 현재로서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지진정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이지만 지진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이나 특정 민간시설물의 경우 건물에 균열과 경사도 및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붕괴우려 등을 미리 탐지하고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물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다.

배지숙의원은 재난은 우리가 방심할 때 예고없이 찾아오며 그러한 재난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대구시가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 발의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이용되도록 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이 그 역사성과 상징성 덕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광장의 운영 원칙과 사용 승인 순서 등을 정하여 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현 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5·18민주광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만큼 광장의 위상과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아동 이동권 대책 마련 촉구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의 적기치료와 재활을 위한 이동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천형(天刑)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야말로 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차별의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아동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장애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이고, 이 중 진단 이후 재활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53.4%로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동의 장애진단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과 이동 및 접근성의 제약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1급과 2급,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로 제한하고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3급 이하 장애아동과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아동은 교통약자임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 이동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은 「경기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8일(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성강화포럼에서 진행한 「지속가능목표(SDGs)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에너지전환 리빙랩(Living Lab)모델 연구 용역」 연구결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관련교육, 실험적 연구, 단체설립 등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한과 책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강화포럼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과 시장여건 속에서 불어오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서 도민의 참여를 중요한 핵심과제로 보고 주민이 삶 속에서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방식의 에너지 전환 실험 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서울의 리빙랩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성대골 마을을 방문전학 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토론회는 정운경(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의 발제와 양근서(공공성장화포럼 회장, 안산6) 의원, 성대골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대표,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황영성 경기도에너지과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운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리빙랩 모델이 실제 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다듬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성장화포럼 회장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 또한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포럼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입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에너지 기본조례가 가진 한계를 넘어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6호, 2017.12.19., 제정]

□ 제정이유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 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제8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제9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제14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1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창업의 지원(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6.13.] [법률 제15180호, 2017.12.12.,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국회미래연구원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214호, 2017.12.12.,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나라의 미래연구는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특성상 연구의 중립성과 연속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로 융합적·체계적 연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미래연구에 대한 여·야간의 지(知)적·정책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기관과의 경쟁과 협업을 통하여 국가 미래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함(제2조).

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제5조).

라. 국회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6조).

마.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제7조제3항).

사. 감사는 이사회에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함(제7조제4항).

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8조).

자. 정관의 변경, 원장 후보자의 추천, 연구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제11조).

차.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제12조).

카. 국회미래연구원의 사업으로 미래 환경의 예측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국내외 대학 ·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교류 · 협력을 규정함(제13조).

타.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고,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함(제14조).

파.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제15조).

하.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거.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7조).

너. 국회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와 이전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19조 및 제20조).

더.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 양여하거나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의견17-0314, 2017.12.1,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을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관리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영유아에게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2017. 11. 3. 조례 제12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동래구조례”라 함)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재위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은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위탁계약의 갱신”이라 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2017. 11. 3. 조례 제122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동래구조례”라 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이러한 경우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계약체결 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법제처 2012. 11. 30. 의견제시 12-0388 참조)입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나 업무의 위탁은 그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으로 곧바로 위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그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어 집행되고 있는 위탁계약의 내용이 개정동래구조례의 개정사항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와 수

탁자에게 곧바로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위탁기간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변경 없이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을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개정동래구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집행중인 위탁계약은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0. 25. 의견제시 11-0237 참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이후에 종전의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어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라 5년의 위탁기간으로 같은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의 갱신에 해당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의견17-0285, 2017.11.30, 경기도]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이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본회의 중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 그 밖에 본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한다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먼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형사절차에서 고의·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4 참조),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민·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7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